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기술심리관 [지재권일반]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의 보조기관(법원조직법 제54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재판합의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The court to which a technical examiner belongs shall decide on a request for exclusion or refusal of the technical examiner.(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기술심리관제도 [특허]

기술심리관제도는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되어 있던 구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특허사건은 기술을 아는 자가 심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그 절충안으로 1998년 3월 1일 도입되었으며, 현재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에 기술심리관이 파견되어 있음.

기술분야 [특허]

발명을 분류함에 있어 기술의 해당분야로서 IPC 분류에 의한. The invention should be placed in its setting by specifying the technical field to which it relates.(발명을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분야를 특정하여야 한다)

기술 이전 [지재권일반]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이 양도, 실수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함.(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1호)

기속력의 범위 [법일반]

법원이 한 번 내린 재판은 스스로 취소·변경을 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데 이것을 재판의 자박성 또는 기속력이라 하며, 재판의 기속력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판결에 위산이나 오기 또는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11조)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기재의 착오에만 적용되므로 본래의 판결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가지 소송지휘상의 결정,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22조)

기산일 [법일반]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의 시작일.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